

# 2022

## 교육활동 보호

# 업무 처리 길라잡이





CONTENTS

제1부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 4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 7

제2부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I. 사안 처리 흐름 ..... 20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안 처리 ..... 21

    1.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초기 대응 ..... 21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조사 ..... 21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분쟁 조정 ..... 22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 25

    5. 침해 조치의 통지 및 불복 조치 안내 ..... 32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 ..... 33

III. 교육활동 침해 기타 대응 방안 ..... 34

제3부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I.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 38

I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41

III.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 43

IV.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 45

제4부 | 기타

I. 각종 서식 ..... 50

II. 심리상담 협력기관(51개) 목록 ..... 78

III. 분쟁조정 및 심의 절차 시나리오 ..... 80

IV. 참고 자료 ..... 89

V. 관련 법령 ..... 94

제 1부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 1

###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권과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Q & A

Q.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A.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보호’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명명합니다. 교권은 권익 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 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활동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향유하는 공통의 법익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때, 모든 교육 주체가 보호 주체로서 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2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 가. 법률 규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그 주체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소속 학교의 학생이란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고, ‘그 보호자’는 소속 학교의 학생의 보호자를 말하며, 그 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이 해당될 수 있다.



##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 1) '교육활동 중'의 의미

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과 동 시행령에서 '교육활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법」상의 '교육활동'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나)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실 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2) '교원'의 범위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sup>1)</sup>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sup>2)</sup> (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말한다.<sup>3)</sup>

1)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각 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교육부고시'라고 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교원지위법」은 형법 등 형사처벌 조항을 준용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로 형사상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부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3

### 구별 개념

#### 가.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행위와 구별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어서 그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라도 생활교육 측면에서 학생의 교육적 지도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를 통한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그 위반 행위는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학교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나. 학교폭력 행위와 구별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상 상해, 폭행 등 구체적인 형사 범죄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점과 그 폭력 행위의 상대방이 학생이 아니라 교원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개념과 구별된다.



1

## 상해와 폭행의 죄

### 가. 개념

#### 1)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

#### 2) 폭행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1) 상해

-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학생을 제지하는 교원을 밀어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경우
- 수업 중인 교원의 손목을 물어뜯어 인대가 늘어난 경우
- 교사의 얼굴 부위를 수십대 가격하여 피멍이 들게 한 경우

#### 2) 폭행

- 교원의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교원의 옷깃을 잡아 흔들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진 경우

### Q & A

Q1.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되나요?

A1. 상처의 정도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경우는 비록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 볼 수 없습니다. (대판 99도3910 참조)

Q2.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교사 옆에 있던 교탁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려 순간 놀랐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교사에 대한 폭행이 성립되나요?

A2.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힘을 행사한 경우 성립되기 때문에, 교사 주변의 물건이나 시설을 때려 놀란 경우라 할지라도 교사의 신체에 대해 힘을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 협박의 죄

#### 가.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을 고지하는 행위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가족 등 교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외부의 인맥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 소화기를 집어 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교사를 교실에 가두겠다고 한 경우

#### Q & A

Q1.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커터칼의 칼날을 꺼내 손목에 갖다 대면서 교사에게 “또 잔소리를 하면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하겠다.”라고 한 경우, 협박에 해당이 될까요?

A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한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칼로 자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판 2010도14316, 대판 2006도2311 등 참조)

Q2. 상대방이 교사에게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사과를 안 하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경우에도 협박이 성립될 수 있나요?

A2.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용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판 98도70 참조)

## 3

###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모욕)

#### 가. 개념

##### 1) 명예훼손

공연(公然)<sup>4)</sup>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4) 공연(公然)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판 2004도2880 참조)



## 2) 모욕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1) 명예훼손

-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A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전체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우리 학교 수학 교사인 그의 매형이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전체 1등이 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2) 모욕

-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병신 같은 ○○놈’, ‘○○년’,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
- 특정 교사에 대하여 ‘A선생은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 학생들 간 단독방에서 특정 교사의 외모 비하 등을 하는 경우

### Q & A

**Q1. 학생이 자신과 친구 1명만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A1.**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진실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1인에게만 말했다 하더라도, 그 1인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판 2007도8155 참조)

**Q2.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되나요?**

**A2.**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Q3. 교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A3.** 전화 통화 중 욕설은 일대일 대화 중이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학생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나이가 몇 살이나, 몇 살인데 반말을 하나?”, “나이 먹은 게 자랑이나?” 등과 같이 불편한 태도를 보인 경우도 모욕에 해당되나요?**

**A4.**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대판 2015도2229 참조)



## 4

## 손괴의 죄

## 가. 개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불만의 표현으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교사의 출석부 또는 교무수첩의 일부나 전부를 찢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 교사가 작성한 컴퓨터 파일을 일부러 삭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Q & A

Q1. 학생이 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욕을 하며 복도에 걸린 액자를 깨뜨려 순간적으로 매우 겁이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협박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손괴에 해당되나요?

A1.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행위이며, 손괴는 타인의 물건 등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학생이 화를 내면서 복도에 걸린 액자를 망가뜨렸으므로 손괴에 해당됩니다.

Q2.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며 난동을 부린 경우도 손괴에 해당되나요?

A2. 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학생이 학교나 교사의 물건이 아닌 자신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는 손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5

##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가. 개념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강제추행)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 및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학생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의 얼굴을 촬영, 캡처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한 경우 및 위 합성물을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Q & A

Q. 학생이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반면, 촬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받아 함께 돌려 본 학생들도 있는 경우 같이 본 학생들은 잘못이 없나요?

A.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배포(반포)하는 행위는 모두 성폭력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그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제14조 제4항)

## 6

### 불법정보유통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가. 개념

##### 1)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등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1)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등

- 원격 수업 중 출석 확인을 위한 채팅창에 교원에 대한 음란한 문언,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 카카오톡 메시저의 단체 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구체적 협박이 아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전화, 이메일 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리나 문자 또는 동영상을 반복<sup>5)</sup>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Q & A

Q.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1회 받은 경우, 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 등을 ‘반복’하여 보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 1회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7

### 공무방해(업무방해)에 관한 죄

#### 가. 개념

##### 1) 공무집행방해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2)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참고로, 관련 판례에서는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2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반복’하여 유통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며,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시(대판 2008도4351 참조)한 적이 있다. 반면, 하루에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반복하여 발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대구지법 2007노146 참조)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1) 공무집행방해

-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학교에 찾아와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차별 대우 했다고 하면서 교사를 찾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교실과 교무실 문을 발로 차고 교실에 침입하여 위협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 2) 업무방해

-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로 쳐들어와 “낙하산으로 들어온 너(교사)는 수업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며 교사를 밀친 경우

## ☞ Q & A

Q.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 계속 수업 내용과 연관 없는 질문을 반복한다거나, 신경 쓰이는 행동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되나요?

A.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육활동(공무, 업무)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지라도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 8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가. 개념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sup>6)</sup>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의 경우
- 육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교원의 동의 없이 몸을 주무르거나,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

6)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판 2007두22498 참조)



- 언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수업 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 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며 말하는 행위
  - 언어적으로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쉬는 시간 복도에서 지나가는 교사에게 큰소리로 “섹시한데!”라고 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행위
  - 수업 시간에 성매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이후 교사가 설명하는 중 학생이 교사에게 “경험담?”이라고 하는 행위
-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 칠판이나 종이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유의점

-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적언동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악수를 청해서 이에 응하여 악수를 했는데 손을 주물럭 거린 경우 성적언동에 해당할 수 있고, 악수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는데도 억지로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 성적 언동이라 하여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적언동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성적언동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와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문제의 언동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성적언동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교원지위법」은 성폭력범죄 행위와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는바 그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진행 시 준수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 행위를 구별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초 사안에 대한 전·퇴학 여부	형사처벌 여부
성폭력범죄	○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	×

9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가.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소속 학교의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소속 학교의 학부모가 자녀의 사적인 일을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 Q & A

Q. 학부모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하여 이로 인해 교원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학부모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교육기본법」 제13조 제2항) 학부모의 이의 제기 및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조건 교육활동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동 등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초과한 부분으로 별도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 10

###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가. 개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집에서 자녀가 원격 수업 중일 때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단독방에 무단 배포한 경우
- 학생이 수업 중인 교원의 얼굴을 촬영 후 합성하여 희화화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무단 배포한 경우

### Q & A

Q.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A.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동의 없이(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대판 2013도16404 참조) 다만, 녹음한 내용을 제3자 등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화 당사자인 상대방도 교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할 수 있으나 이를 무단 배포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1

##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가. 개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sup>7)</sup>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행위

## 유의점

-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판단할때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입니다.
- 재량권의 한계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대부분 형사법 위반 행위들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체계상 학교장의 재량권 범위도 다른 침해 유형에 준하는 법령 위반 사항의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수업내용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반복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 수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 Q &amp; A

Q. 학생 중 한 명이 담임교사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담임교사가 지도를 하면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대답을 하지 말자고 하며 담임교사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선동하였습니다.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어떤 반응을 하지 않고 교사를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반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위의 사안과 같이 다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교권을 존중하는 것을 위배하는 행위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를 의논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역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권 존중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판단과 조치를 하여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 학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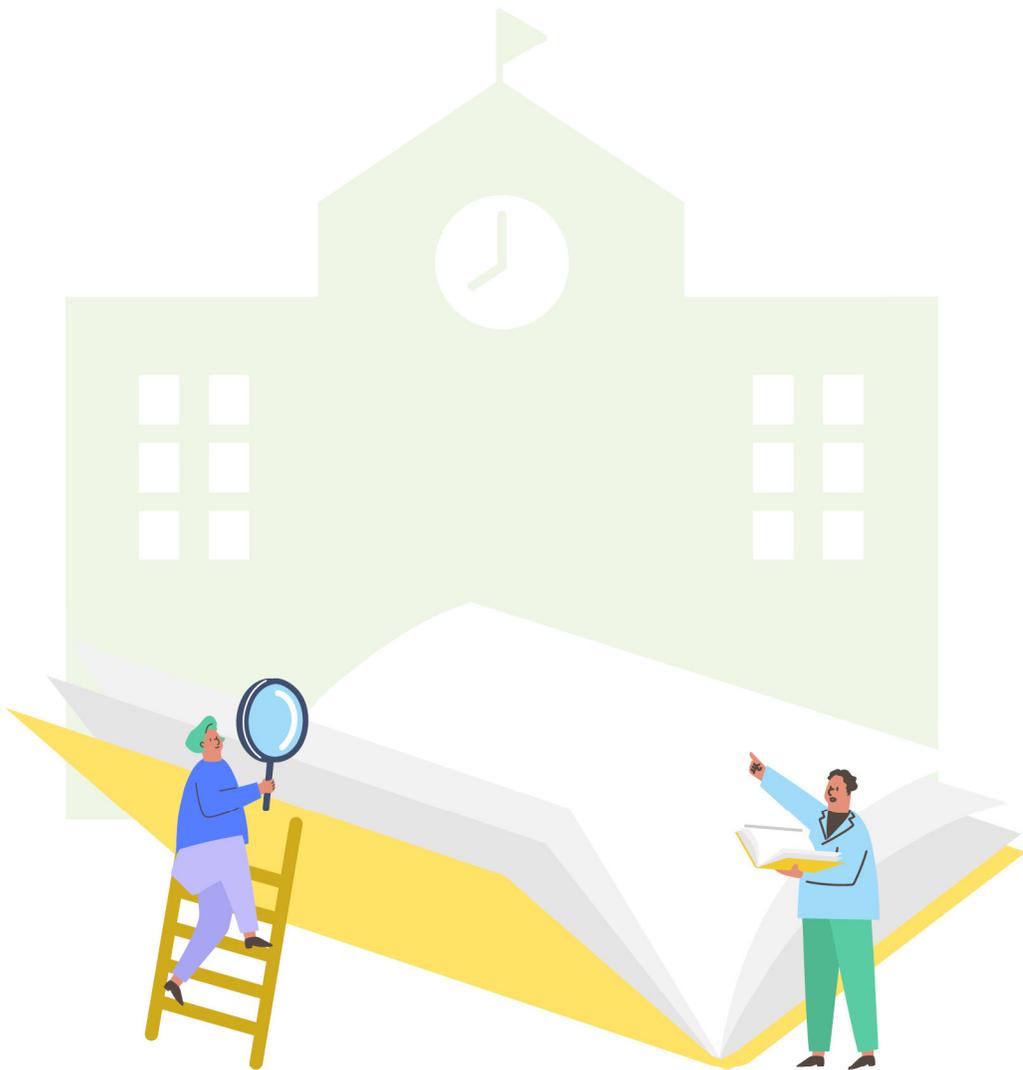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 제 2부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 I. 사안 처리 흐름
-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안 처리
- III. 교육활동 침해 기타 대응 방안



# 사안 처리 흐름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안 처리



## 1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초기 대응

- 가. 응급 상황인 경우 119 신고, 범죄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112 신고
- 나. 교장 및 교감에게 상황 보고
- 다. 학교 현장의 안정화 조치
- 라. 관련 피해 교원의 안정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작성 안내
- 마. 관련 학생의 안정 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

### Q & A

Q.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사안 처리의 방향 및 원칙이 있나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하였을 때, 관용적인 태도 지양,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은폐 금지, 상급 기관 의무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결과 보고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고를 받는 관할청에서는 보고 결과를 해당 학교나 학교의 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교원지위법」 제16조)

##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조사

### 가. 관련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접수

- 1) 업무담당 교사는 교권보호책임관에게 보고
-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장에 작성

### 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

- 1)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 k-에듀파인으로 보고([서식5])
- 2) 관할 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및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한 도움 요청

### 다. 피해교원의 분쟁 조정 의사 유무 확인 및 관련 당사자 의사 확인

###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진행 준비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분쟁 조정

가. 분쟁 조정의 목적 및 필요성

- 1) 자발적 대화 모임을 통하여 평화적 · 회복적으로 갈등 해결
- 2) 당사자들의 분쟁상황 직면을 통하여 구체적 회복 방안 마련
- 3) 당사자들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로 재발 가능성 감소

나. 분쟁 조정 절차 흐름

절차	내용	유의점
분쟁 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접수</li> <li>- 교원 및 상대방의 분쟁 조정 의사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 당사자가 모두 분쟁 조정 의사 있을 때 분쟁 조정 절차 진행</li> </ul>
분쟁 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sup>8)</sup></li> <li>② 분쟁 당사자 간 고소 · 고발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sup>9)</sup></li> <li>③ 분쟁 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sup>10)</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시 거부 등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li> </ul>
분쟁 조정 방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절차 진행</li> <li>② 분쟁 조정 전문가를 연계하여 절차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연계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관련 당사자 동의 확인 ([서식9] 참고)</li> </ul>
분쟁 조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또는 전문가 연계</li> <li>- 당사자 의견 및 요청사항 청취</li> <li>- 중재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서 작성할 때 합의 내용에 유의</li> </ul>
결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분쟁 조정 성립 시</b></li> <li>-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li> <li>• <b>분쟁 조정 불성립 시</b></li> <l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의 재조정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의 재조정 신청시 양 당사자 모두 분쟁 조정의사 필요</li> </ul>
결과 보고 및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17] 참고</li> </ul>

8) 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 표시한 경우

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도 포함

10)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



### 다.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 조정 절차

#### 1)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교육원지위법」 제15조 제6항)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를 통한 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 2) 신청 방법

- 분쟁 당사자 모두 전문가 연계 조정 진행에 동의([서식9])한 경우 신청가능하다.
- 학교장이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신청서([서식8])를 K-에듀파인으로 제출한다.
-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분쟁 조정전문가(기관)를 연계한다. (신청 후 연계까지 1~3일 소요)

#### 3) 결과보고

- 분쟁조정 전문가는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및 해당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분쟁 조정의 결과를 보고한다.

#### 4) 비용지급

- 소요되는 비용은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분쟁 조정 전문가에게 지급한다.

#### 5) 업무 처리 절차

당사자 분쟁 조정 의사 확인	분쟁 조정 전문가 개입 결정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 요청	분쟁 조정 전문가 지정 등 회신	관련 자료 제공 등	분쟁 조정 1단계 사전 모임 진행	분쟁 조정 2단계 대화모임 진행	분쟁 조정 결과 제출	분쟁 조정 전문가 비용 지급
	교보위 위원장 ↓ 학교장	학교장 ↓ 경기교권 보호지원 센터	경기교권 보호지원 센터 ↓ 학교장	학교장 ↓ 분쟁 조정 전문가	분쟁 조정 전문가 ↓ 당사자	분쟁 조정 전문가 ↓ 당사자	분쟁 조정 전문가 ↓ 교보위 위원장 및 경기교권보 호지원센터	경기교권보 호지원센터 ↓ 분쟁 조정 전문가

※ 분쟁 조정 사전모임과 대화모임 진행 시 학교는 시간 안내와 장소 확보(2곳 이상)

### 라. 분쟁 조정을 진행할 때 유의 사항

#### 1) 분쟁 조정 시 기본 원칙 준수

- 설득하지 말고 설명하기
- 답을 주거나 판단하지 않기
- 당사자 간 오해/불일치되는 부분 확인하기
- 사과 중용하지 않기



-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 절차를 준수한다.
  - 개의 정족수, 제척 등 사유 확인 등
  - 분쟁 조정 시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3) 분쟁 조정 과정에서 인권침해(공개 사과, 사과문 낭독 등)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4) 분쟁 조정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심의 하지 않으므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및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음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안내한다.
  - 피해교원이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조정 절차가 아닌 심의 절차로 진행
- 5) 분쟁 조정 합의서 작성 시 피해 보상,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과 약속 불이행 시 후속 조치 내용에 대하여 합의 가능하다.

#### 마. 분쟁 조정 합의 후 해당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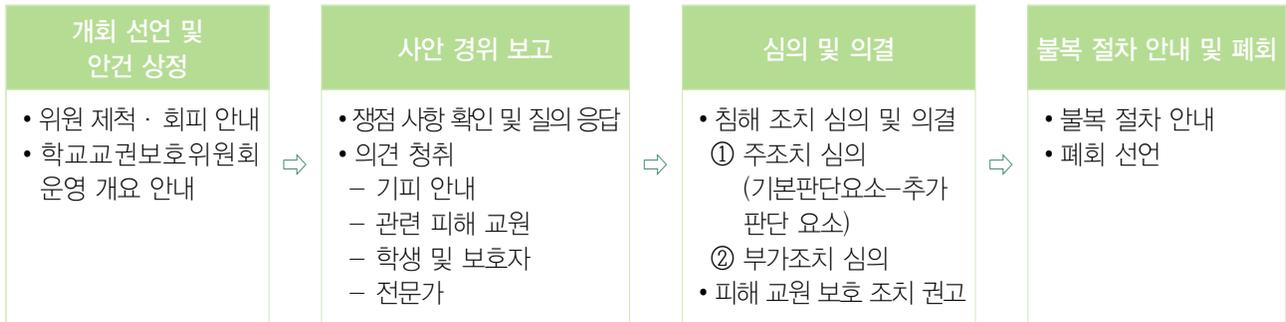
- 분쟁 조정 성립 시에도 해당 교원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1인당 50만 원 한도)이 가능하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교원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구상권 행사와 무관하다.





##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흐름



###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1)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sup>11)</sup>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 시 심의 사안의 요지(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등 구체적 사실 포함)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 2)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회의의 비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예시) 제14조]
- 제3자의 회의 방청 : 사안과 관련이 없는 제3자는 회의에 참여하거나 방청할 수 없다.
- 변호사 참석 여부 : 사안의 당사자가 법률대리인(변호사)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의 참석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 피해교원· 침해자 등 당사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상 규정은 없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준함)

11)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 4)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

발생한 사안이 ① 교육활동 침해 주체에 해당하는지,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인지,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등을 피해 교사의 진술, 관련 학생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 나) 침해 학생 조치 심의

침해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침해 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심의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6호) 제3조에 규정된 [별표]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결정할 때

- 기본적으로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④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 추가적으로

-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를 감경할 수 있고,
- ② 피해 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2) 합의 점수 도출

(가) 각 기본 판단 요소의 합의 점수를 도출하고 만장일치 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을 내지 않도록 유의)

(나) 추가 판단 요소의 경우 감경 ·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때 감경 · 가중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전 · 퇴학 조치 시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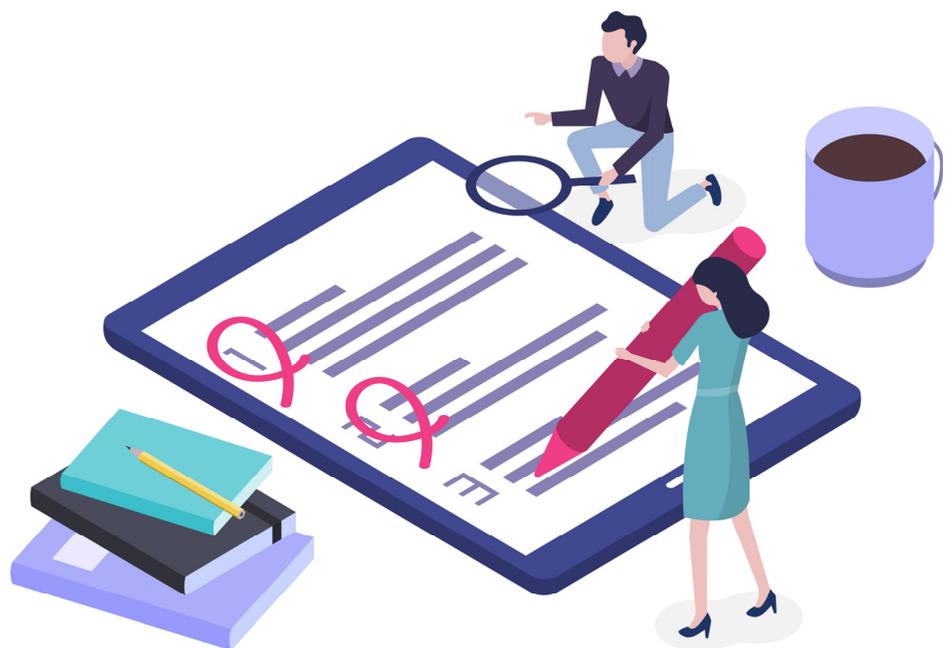
(가)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다.

-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2019.10.17. 이후 동일 학생에 대하여 최초로 개최된 학교교육보호위원회를 말한다.

(나)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 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은 2019.10.17.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을 의미한다.
  - 종전에 내린 조치 결정은 적법 유효해야 한다.
  - 학생에 대한 전·퇴학 조치는 가장 중대한 조치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이므로 하나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동일 학생에 대한 여러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1차, 2차 조치로 보지 않는다.
- (다) 위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사건에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할 수 있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교육부고시 2021-26호)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에 부가 조치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2호	8~10
	3호	-
외부기관 연계선도	4호	11~13
	5호	14~16
교육 환경 변화	6호	17~21
	7호	-
	7호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5) 침해 학생 조치의 내용

가) 학교에서의 봉사(제1호) 및 사회봉사(제2호)

- 사안의 경중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 시간을 정하여 조치한다.
-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제7항)

[결정례]		
사례1	침해 학생에 대하여 교내 봉사 조치 결정을 한 경우	학생 :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사례2	침해 학생에 대하여 사회봉사 조치 결정을 한 경우	학생 : 사회봉사 8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3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단독으로 3호 조치만 결정할 수도 있고 1, 2, 4, 5호 조치에 부가할 수도 있다.
- 사안의 경중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 시간을 정하여 조치한다.
-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참여’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제7항)

[결정례]		
사례1	침해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조치 결정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 특별교육 이수 5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li> <li>• 보호자 참여 : 특별교육 1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li> </ul>
사례2	침해 학생에 대한 주된 조치로 교내봉사 조치, 부가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특별교육 이수 4시간(「교원지위법」 제18조 제3항)</li> <li>• 보호자 참여 : 특별교육 2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li> </ul>

다) 출석정지 (제4호)

- 사안의 경중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출석정지 일수를 정하여 조치한다.
- 출석정지 일수에 제한은 없으나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목적상 적절한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학생의 출석 일수를 고려하여 유예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결정례]

사례1	침해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 출석정지 10일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4호)</li> </ul>
사례2	침해 학생에 대하여 주된 조치로 출석정지 조치, 부가 조치로 심리치료 조치를 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 출석정지 15일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심리 치료 3시간(「교원지위법」 제18조 제3항)</li> <li>• 보호자 참여 : 심리치료 1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li> </ul>

## 라) 학급교체 (제5호)

- 교육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사안의 경중등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다.
- 소규모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이 학생의 소속과가 제한적인 경우 등 학급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결정례]

사례1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학급교체 조치를 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 학급교체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5호)</li> </ul>
사례2	침해학생에 대하여 주된 조치로 학급교체 조치, 부가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 학급교체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특별교육 2시간(「교원지위법」 제18조 제3항)</li> <li>• 보호자 참여 : 특별교육 1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li> </ul>

## 마) 전학 (제6호)

- 전학 조치가 결정된 경우 그 이행(전학 배정 신청 등) 전에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자 참여’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 [결정례]

사례	침해 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결정하면서 특별교육의 부가 조치를 내린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 특별교육 이수 1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전학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6호)</li> <li>• 보호자 참여 : 특별교육 1시간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li> </ul>
----	--	--

## 바) 퇴학 (제7호)

-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해당 학생이 학교 내에서는 더이상 선도 교육이 어렵고 학교 밖의 대안적 교육 등이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조치한다.



- 고등학생에 한하여 조치할 수 있다.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부가할 수 없다.

[결정례]		
사례	침해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결정한 경우	• 학생 : 퇴학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7호)

사) 침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에 대한 보호자 참여

- 보호자의 참여는 학생의 조치에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독립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sup>12)</sup>
- 학생과 동일한 조치를 내리되 참여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참여의 형식에 제한은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미참여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참고4] 활용)

아)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또는 '조치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sup>13)</sup>

-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아니나 학생의 행위가 학교 규칙 위반행위로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그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맞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학생 조치에 대한 내용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조치할 수 없다.

[결정례]		
사례1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학생 :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사례2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맞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학생 조치 점수가 0~4점이 나온 경우	학생 : 조치 없음

자)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행위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행위는 학교규칙에 따라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각각 분리하여 조치한다.

12)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이수 조치는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적인 처분으로서 해당 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20구합1440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13)

학생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내용	'조치 없음'	'교육활동 침해 아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가능 여부	조치 불가	조치 가능
피해 교원 보호 조치 가능 여부	조치 가능	조치 불가
피해 교원 불복 가능 여부	불복 불가	불복 가능



### 👉 Q & A

Q. 학생이 수업 중 핸드폰을 사용하여 이를 지도하였더니 이를 지도하는 교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경우 사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학생이 수업 중 핸드폰을 사용한 행위는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행위로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치하여야 하고, 수업 중 이를 지도하는 교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분리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합니다.

### 차)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 개시 기한(「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조치 종류	조치 이행 개시 기한 <sup>14)</sup>	
1호~5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6호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종료일부터 계산
7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5

### 조치 결과의 통지 및 불복 절차 안내

####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서 통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예시) 제7조 제1, 2항)

#### 나. 학교장의 조치 결과 통지

-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예시) 제7조 제2항)
- 조치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피해 교원도 포함되므로 피해 교원에게도 통보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예시) 제7조 제3항)
- 결과통지는 문서로 하며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기재한다. 또한 학생에게 그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이행 '개시' 기한을 규정한 것이고 조치 자체의 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님



**다. 침해 학생의 불복 방법**

- 1) 전학, 퇴학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 2) 그 외 조치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라. 피해 교원의 불복 방법**

-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교원지위법」에 피해 교원의 재심 청구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로 진행할 수 있다.
- 2)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조치 없음’ 결정 포함)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

- 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발생 시(교육활동 침해 신고서 접수 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에 사안의 발생 보고해야 한다.(사안 발생 보고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보고)
- 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사안 결과 보고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 보고)
- 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 언론사안, 법률지원 요청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고한다.
- 라. 사안 발생 보고 및 결과 보고 안내

	발생 보고			결과 보고		
	기한	양식	절차	기한	양식	절차
학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보고 [서식5]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k-에듀파인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료 후 5일 이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결과보고서 [서식17]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k-에듀파인 보고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중대사안 · 언론사안 · 법률지원을 요청한 경우</li> <li>•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로 k-에듀파인보고 (학교 공문 접수 후 48시간 이내)</li> <li>•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후 학교 보고양식으로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사안 · 언론사안 · 법률지원 요청한 사안으로 발생 보고된 사안의 경우</li> <li>•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로 k-에듀파인 보고</li> </ul>		



1

## 형사소송(고소 및 고발)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 처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유의 사항

- 1)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의사를 밝힌다.
- 2)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목격자 진술서, 녹취 등의 기록을 확보해두어 증거로 활용할 때 구제 확률이 높아진다.
- 3) 모욕죄 등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만 고소가 가능하고 고발할 수 없다.
- 4)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유효하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5)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9조 고소·고발 대상 아니다.

2

## 민사소송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 시 유의 사항

- 1) 소장(가해자(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 되어야 함)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 2)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알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3) 불법행위와 교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구제 확률이 높아진다.



### 3 소년통고제

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선도하는 방법으로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다.

나. 방법

- 1) 학교장이 가정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sup>15)</sup>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하다.
- 2)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이다.

다. 특징

- 1)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학생의 비행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육, 치료 및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3) 학생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비행 초기에 선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라. 관련 법률 조항

####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15) 통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되며,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통고"로 검색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다.

## 제 3부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 I.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 I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III.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 IV.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 1 보호조치의 주체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가. 관할청
- 나. 유치원의 장
- 다. 각급 학교의 장

## 2 보호조치의 내용 (「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

### 가. 특별휴가

학교의 장은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Q & A

Q.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조치인 특별 휴가의 경우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기존 결재한 특별휴가를 취소하고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된다.

### 나.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 센터를 통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협력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1) 치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체적 · 물리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 2) 치료를 위한 요양

##### 가)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을 경우 의료보험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Q & A

Q. 공무상 요양승인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원은 어떻게 하나요?

A.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나) 공무상 병가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9호(2019.4.)]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라.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예시) 비정기 전보 요청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각 세부기준에서 정한 비정기전보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비정기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 초등)

제15조(비정기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직위 근무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교사의 경우 정기 전보일에 실시하고 교육상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는 예외로 하며, 9호부터 14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전보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9. 교원 보호를 위한 당위성이 인정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2조(비정기전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장의 전보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직위 근무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5. 성희롱 피해자 등 교원 보호를 위한 당위성이 인정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3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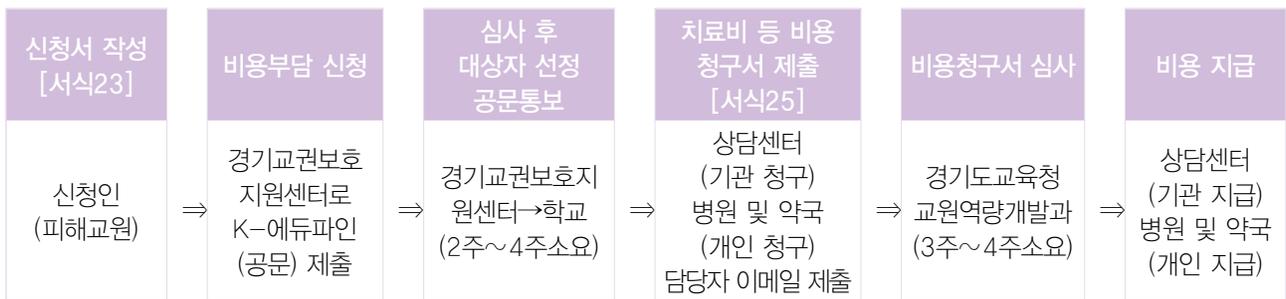
가.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등이 부담한다.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 나. 경기도교육청의 보호조치 비용 우선 부담

- 1) 피해 교원이 도교육청에 치료비 등을 선 지급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은 비용을 부담한 후 침해자(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대상 : 피해 교원이 치료비 등 선지급 요청 시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3) 부담내용 : 심리상담 및 조연에 든 비용 및 치료비, 약제비
- 4) 부담범위 :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지급(1년간)
- 5) 비용 부담 여부 결정 기한 : 14일 이내 / 14일 연장 가능 (연장 결정 시 당사자에게 통보)
- 6) 절차



#### ▶ 비용청구서 제출 방법

- 상담(기관청구)  
심리상담 비용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상담센터)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하며, 협력기관 이용 시 협력기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비용을 청구함.
- 병원 및 약국(개인청구)  
병·의원 진료 및 진료에 따른 약국 이용 시 피해교원이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이메일 protectgoe@korea.kr)으로 비용을 청구함.

### 다. 경기도교육청의 구상권 행사

경기도교육청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하여 우선 부담한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심의를 통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 ▶ 구상권 행사의 예외<sup>16)</sup>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3)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 4) 보호자 등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인 경우
- 5) 그 밖에 교육활동보호조치 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16)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 1 기능

- 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나.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라.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2 구성 및 운영

가. 구성(「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항~제3항, 제16조)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b>위원 중 선출</b> *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 직무대행 순서 는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운영규정 을 확인한다.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1회 연임 (2년)가능
		<b>위원 해촉 사유</b>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예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인원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교원 위원수(1/2 초과금지)	2명 이하	3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 나. 회의 운영

### 1) 회의 소집 및 정족수(「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5항)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①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의 :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 의결 :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② 재적 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의정족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인원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개의정족수(2/3 이상 출석)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예시)] 제6조)

### 2) 제척 등 사유(「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 16조)

제척	회피	기피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한다.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당연 배제되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 위원들에게 제척사유가 있는지 미리 살핀 후 출석 요청 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자는 기피사유를 소명하여 신청</li> <li>당사자의 기피 신청 있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기피 신청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 사유가 있는지 심의하여 기피 신청 인정 여부를 판단</li> <li>기피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배제(다만 출석위원에는 포함)</li> <li>기피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기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법제처 09-0129, 2009.5.29. 참조)</li> <li>(예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재적위원 총5명, 출석위원 4명, 출석위원 중 1명이 기피 결정되어 총 3명이 된 경우</li> <li>- 기피 결정된 위원도 개의(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개의정족수 4명(재적 2/3출석) 충족함. 그러나 기피 결정된 1인은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되므로 기피 결정된 1인을 제외한 위원 3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li> </ul>		

### 3)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고 통상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간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객관적 중립적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개정 절차

운영규정 제정·개정 절차	근거법령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li> <li>「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4항</li> </ul>
② 학교규칙 제정·개정절차에 따른다.	
③ 법령에 따른 학교규칙 제정·개정이므로 의견수렴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확정한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예시) 참조	



2022  
경기교권  
보호지원  
센터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거점지역(고양, 용인, 수원) 중심으로 기존의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과 함께

- 🌿 심리치유 지원대상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서 직무스트레스 교원까지 확대하고,
- 🌿 교육활동침해 사안 심층 통합지원, 맞춤형 심리상담지원 및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 🌿 교직에 대한 자긍심과 효능감 증진으로 교원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 운영 개요

### 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3권역(고양, 용인, 수원) 설치 및 운영

- 1) (구성) 센터장(미래국장), 부총괄(혁신·학생지원과장),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교권전담상담사 1명
- 2) (센터별 소속 지역 및 위치)

3권역지도	센터명	위치	소속지역
	경기북부 교권보호지원센터	고양	고양, 김포, 파주,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연천
	경기남동 교권보호지원센터	용인	용인, 안성, 여주, 이천, 성남, 광주하남, 평택, 안양과천, 양평
	경기남서 교권보호지원센터	수원	화성오산, 안산, 시흥, 수원, 부천, 광명, 군포의왕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개소식(5월 예정), 교육활동 침해사안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3월부터 예정)
- 상세 주소(센터별 개인·집단 상담실 구비)
  - 경기북부교권보호지원센터 : 금계초등학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90)
  -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 43
  - 경기남서교권보호지원센터 : 원천중학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51번길 38)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는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나. 주요 운영 프로그램(※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계획 참조)

-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현장 지원)
- 2) 교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심리상담 지원, 직무 관련 스트레스 교원 심리상담 지원)
- 3)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교원 집단 상담, 교원힐링성장 프로그램, 코로나블루 심리회복 개인 상담 등)
- 4) 교육활동 보호 연수 운영(교권보호책임관, 교권보호업무 담당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운영)
-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연계(분쟁 조정전문가 연계 및 비용지원, 분쟁 조정 성립 교원 심리상담 지원)

## 2

###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지원

#### 가. 지원 내용

- 1) 학교 문의(민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유선, 홈페이지, 원격, 센터내방 및 학교방문 등)
- 2)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운영



####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통합 지원(행정지원,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을 위하여 도교육청(변호사) + 교권보호지원센터(장학사, 상담사)+교육지원청(장학사)가 한팀이 되어 학교로 방문하여 지원하는 방식

#### 나. 지원 방법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 제출 시, '현장지원 요청여부'란에 표시하여 신청 가능(분야별 신청 가능, 행정·법률·심리상담)
-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경기교육메신저 또는 유선으로 문의 후 신청 가능





## 1 구성

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차례 연임 가능

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 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위원의 제척 등 사유, 해촉 사유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동일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 14조)

## 2 심의·조정 사항 (「교원지위법」 제19조)

가. 교육감이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시책 자문·심의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 조정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라.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회의 소집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

#### 가. 회의 소집 사유

-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4 분쟁의 재조정

#### 가.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의 대상

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개시하여 진행하였으나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분쟁 조정이 불성립되었는데 당사자가 다시 한번 조정을 원하는 경우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분쟁 사안의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나. 절차

##### 1) 조정신청서 제출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 가) 분쟁의 재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학교장에게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나) 학교장은 분쟁 조정 개시 거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후 조정신청서와 함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자료 일체를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로 제출한다.
-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불성립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2) 분쟁 조정 개시 거부·중지 사유(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 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다) 분쟁 조정의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 조정 기일 연기 신청(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조정기일 출석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는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분쟁 조정 기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일 연기 신청을 받은 경우 다시 분쟁 조정 기일을 정한다.

4) 분쟁 조정의 종료(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 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 나) 분쟁 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5**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가. 형사고발 요청 사안의 심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형사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법률 자문을 받은 후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사안의 축소·은폐 금지의무 위반 여부 심의**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축소·은폐 시 교원지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 제 4부

# 기타





- I. 각종 서식
- II. 심리상담 협력기관(51기관) 목록
- III. 분쟁조정 및 심의 절차 시나리오
- IV. 참고 자료
- V. 관련 법령





서식1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피해 교원		상대방(학생, 보호자 등)	
소속학교		성명(학번)	
성명		피해 교원과의 관계	
연락처(휴대폰)		연락처(휴대폰)	
신고 내용	<p><i>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함.</i></p>		
분쟁 조정 절차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함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지 않음
기타 입증자료(첨부)	목격자, 문자 캡처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00. 0. 0.			
			성 명: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2 | 관련 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관련 학생 등	소속학교			
	성 명 (학번)			
	연락처 (휴대폰)			
학생의 보호자	성 명		연락처	
사안에 대한 의견	<p>사실 관계 인정 여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p>			
분쟁 조정 절차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함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지 않음	
기타 입증자료(첨부)	목격자, 문자 캡처 등			
<p>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00. 0. 0.</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서명)</p>				
○○○○학교장 귀하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

### 서식3 | 사실 확인서 (목격자 등)



1. 이 확인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이 확인서는 업무담당자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등 제한된 관련자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성 명	소속(지위)	00학교00 학년 00반 또는 000교사
연락처 (휴대폰)		
<b>사안과 관련하여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목격 사실 등 확인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00. 0. 0.		
		성 명: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4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안내



제 ○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소속(지위)	○○ 학생의 보호자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 소			
안 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정 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사안의 요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인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사실관계의 요지 설명		
참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학교 (전화 :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li> <li>2. 출석하실 때는 본 안내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li> <li>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u>서면 의견서</u>를 작성하여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직인) ※ 학교장직인 대체가능			

\* 서면 진술 의견서는 [서식2] 관련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

## 서식5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 (학교장→교육지원청)



학교명 (지역)			신고서 접수일	20 년 월 일 ( )요일	
교권보호 책임관	성명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연락처 (휴대전화)	
사안 개요					
사안 발생 일시	20 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		사안 발생 장소		
주요 내용					
구체적 행위 내용	<p>※ 예시(육하원칙에 의거 내용 정리)</p> <p>• 침해 학생(0학년 남)이 00에서 피해 교원에게 폭행, 욕설 등을 하고 ... (사안 구체적 내용)</p>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예정일			20 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		
피해교원 상황 및 조치			침해 행위자 상황 및 조치		
성명		지위	성명		지위
연락처			연락처		학년 반
상황	• (예시)안정을 찾고 정상 근무 중이나 침해학생과의 분리를 호소함.		상황	• (예시)원격 수업 주간으로 학생은 등교하지 않음.	
조치	• (예시)특별휴가(00일) 권고		조치	• (예시)등교 수업 시 피해 교원과 대면 가능성 높음.	
현장 지원 요청 여부	구분		요청 여부	요청 사유	
	행정(행정적 처리 방법 등)		<input type="checkbox"/>		
	법률(법률 절차, 법적 대응 등)		<input type="checkbox"/>		
	심리(피해교원 심리 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서식6 |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거부·중지·종료 통보서



분쟁조정 신청인			
성 명		소속 학교/직급	

통보 내용	<p>[사유]</p> <p>1. 분쟁 조정 신청했으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 )</p> <p>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p> <p>3. 분쟁 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p> <p>4. 분쟁 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p> <p>(*당사자들이 조정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 개시를 하였으나 그 이후 당사자들이 분쟁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1개월이 경과한 경우)</p>
	<p>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쟁 조정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분쟁 조정 절차는 (거부 / 중지 / 종료) 됩니다.</p> <p>관련 사안은 <u>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u>로 진행될 예정입니다.</p>

※ 분쟁 조정 의사 표시를 한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 거부 등 사유를 통보하는 양식임.  
(분쟁 조정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경우에는 통보할 필요 없음.)

20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직인) ※ 학교장직인 대체가능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

## 서식7 | 분쟁 조정 합의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직접 분쟁조정된 경우)



분쟁조정 합의서 : ○○○사안			
학교명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분쟁 조정 당사자	성 명	성 명	
조정 합의 내용	<p>우리는 분쟁 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p> <p>(예시)</p> <p>1. 사과/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의 책임을 돌아보고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합의</li> <li>- 당사자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실제적인 피해를 바로잡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탐색</li> </ul> <p>2. 재발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의 제안 및 요청</li> <li>- 재발방지와 관계의 회복을 위해 상호간 어떻게 존중, 신뢰, 배려 등 가치가 회복되는 것 등 포함</li> </ul> <p>3. 다만, 피신청인이 조정 합의안을 미이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p> <p>또는</p> <p>분쟁조정 불성립</p>		
당사자 :	(서명)	당사자 :	(서명)
20○○.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직인) ※ 학교장직인 대체가능			



서식8 |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 요청서 (학교장→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학교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신청일				사안명	(예시) 교원과 학생 간 분쟁 조정 건	
관 련 자	구분	성명	직위	성별	생년월일	기타
	당사자					
	당사자					
사안 주요 내용						
분쟁조정 희 망 일시 및 장소		(1안) (2안) (3안)				
첨부서류		전문가 연계 분쟁 조정 절차 동의서([서식9])				
2000. 0. 0.						
0000학교장 000 (직인)						



### 서식9 | 전문가 연계 분쟁 조정 절차 동의서



전문가 연계 분쟁 조정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교원의 성명, 전화번호	전문가 연계 분쟁 조정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분쟁 조정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연계된 분쟁 조정 전문기관 (에듀피스 또는 코피)	교원의 성명, 전화번호	전문가 연계 분쟁 조정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분쟁 조정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2000.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귀하



## 서식10 | 전문가 연계 분쟁 조정결과보고서 (담당조정자→학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 사안이 다음과 같이 조정 성립(또는 불성립)되었으므로 이에 보고합니다.

## 1. 사안의 개요

사안명	(예시) 교원과 학생 간 분쟁 조정 건		학교명	
진행자(조정자)				
당사자	구분	교원	상대방	
	성명			

## 2. 사안의 진행 경과(예시)

	일시	장소	절차	진행 내용의 요지
1	22.01.01.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 요청 접수	
2	22.01.03.		조정자 선정	
3	22.01.13. 15:00~18:00		1단계 사전모임	
4			2단계 대화모임	
5			분쟁 조정 (불)성립	

## 3. 분쟁 조정 결과의 요지

결과	이유	추후 절차
분쟁 조정 성립 (분쟁 조정 불성립)	양 당사자 모두 사과,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에 합의 (당사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관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결과 보고 - 사안 종료 (해당학교에서 추후 절차 진행 예정)

## 4. 첨부

분쟁조정 성립한 경우 합의서 사본 첨부(분쟁 조정 전문기관 작성)

2000. 00. 00.

담당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

## 서식11 | 기피 신청서



기피 신청인	성명		소속	0000 학교
	연락처 (휴대폰)			
기피 신청 내용	기피 대상자			
	기피 신청 이유	*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귀하



서식12 | 제 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예시)



<b>일 시</b>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b>장 소</b>		
위원정수 : 명	참석위원 : 명	불참위원 : 명
관련 당사자 참석유무	신청인(피해교원)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의 보호자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p>• 회 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li> <li>2. 당사자 참석 여부 확인 및 성원 보고</li> <li>3.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li> <li>4. 회의 목적, 진행 절차, 주의사항 전달</li> <li>5. 사안의 요지 보고</li> <li>6.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 교원, 침해자(학생, 학부모 등))</li> <li>7. 사안 협의 8. 폐회</li> </ol>		
<p>• 심의 절차 시나리오 참고</p> <p>•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p>		
[참석위원 명단]		
[개회 및 인사]		
간사 :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진행 절차,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		
[간사의 사안 요지 설명]		
[당사자(피해 교원) 의견 청취 및 문답]		
위원장 : (신분 확인) / 기피 신청 여부 확인		



[당사자(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의견 청취 및 문답]

위원장 : (신분 확인) / 기피 신청 여부 확인

\*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간사는 위원들에게 각 당사자에게 사안의 요지 및 위원의 회의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사실, 각 당사자가 불출석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사안 협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심의

위원장 :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해 학생 조치 사항 심의]

1. 기본 판단 요소 심의 - 각 판단 요소에 대한 합의 점수 도출 / 합의 안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각 위원 점수의 합산 후 평균 점수 내지 않음.

2. 추가 판단 요소 심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 내용의 가중, 감경 의결

[피해 교원 보호조치 사항 심의]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안내]

[폐회]

위원장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 년 제○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치 결정 및 의결내용]

• 침해 학생 조치

	이름 (학년/반)	교육활동 침해 유형 (관계 법령)	조치 결정 (관계 법령)	의결 내용
1	○○○ (○학년○반)	모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제1호)	사회봉사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제2호)	만장일치
2				
3				
4				



서식13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의결서 (위원장→학교장)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요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장소	
교육활동침해 행위 유형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죄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모욕)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범죄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	<input type="checkbox"/> 공무 방해(업무 방해)에 관한 죄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동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부당한 간섭 <input type="checkbox"/> 찰영물 등 무단배포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의 판단( )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결정이유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이유: 수업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xx년이라고 욕설했으므로 모욕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OO학부모가 전화로 욕설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 아님.)		

2. 침해 학생 조치

	이름 (학년/반)	교육활동 침해 유형 (관계 법령)	조치 결정 (관계 법령)	의결 내용
1	○○○ (○학년○반)	모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사회봉사 5일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만장일치
2				
3				

20 년 월 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직인)

○○○학교장 귀하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

## 서식14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침해 학생용)



침해 학생	성명	소속학교	학년/반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장소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죄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모욕)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범죄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	<input type="checkbox"/> 공무 방해(업무 방해)에 관한 죄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동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부당한 간섭 <input type="checkbox"/> 촬영물 등 무단배포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의 판단( )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조치 내용	※ 예시 학생: 사회봉사 5일(「교원지위법」제18조 제1항 제2호) 및 특별교육 5시간(「교원지위법」제18조 제3항), 보호자 참여: 특별교육 3시간(「교원지위법」제18조 제4항)	
	조치원인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이유: 수업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xx년이라고 욕설했으므로 모욕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OO학부모가 전화로 욕설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 아님.)	
전,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안내	전,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교원지위법」제18조 제8항)		
침해 학생 불복절차 안내	국공립 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제27조) 2)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청구(「행정소송법」제20조)	
	사립 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 ○○○, 연락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조치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학교장 (직인)			



서식15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지서 (학생 외 침해자용)



침해자	성명		지위		피해 교원과의 관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장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죄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모욕)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범죄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		<input type="checkbox"/> 공무 방해(업무방해)에 관한 죄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동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부당한 간섭 <input type="checkbox"/> 촬영물 등 무단배포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의 판단( )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이유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이유: 수업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xx년이라고 욕설했으므로 모욕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OO학부모가 전화로 욕설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 아님.)				
(담당자: ○○○, 연락처: ○○○-○○○-○○○○)						
제○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이유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학교장 (직인)						



## 서식16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통지서 (피해 교원용)



구분	성명	소속학교	직위
피해교원			
침해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장소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죄 <input type="checkbox"/> 협박의 죄 <input type="checkbox"/>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모욕)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범죄 <input type="checkbox"/> 손괴의 죄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행위	<input type="checkbox"/> 공무 방해(업무 방해)에 관한 죄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동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부당한 간섭 <input type="checkbox"/> 촬영물 등 무단배포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의 판단( )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판단 및 이유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이유: 수업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xx년이라고 욕설했으므로 모욕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OO학부모가 전화로 욕설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내용	구분	이름	조치 사항
	피해 교원 보호 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또는 해당 없음.
	침해 학생 조치 내용		
피해교원의 불복절차 안내	국공립 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경우 1)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제27조) 2)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청구(「행정소송법」제20조)	
	사립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이유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학교장 (직인)			





## 서식18 |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신청서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신청서					접수자 기록	번호	교권-
						일자	
						접수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	소속교	○○교	직위	교사	
	휴대전화	000-0000-0000				재직경력	5년 6월
피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	소속교	00교	신분	학생 (학부모)	
	성별	여, 남	휴대전화	000-0000-0000		피해 교원과의 관계	담임, 교과담당 교사 등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100(100동 100호)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 일자	20 년 ○월 ○일		조정 결과	(예시) 분쟁조정 불성립.		
조정 요청 내용	(예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므로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한 번 분쟁 조정을 요청하고자 함.						
증빙 제출 자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협의록, 분쟁조정 합의서, 기타 참고자료						
위와 같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 월 ○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 피해교원 또는 업무담당자 작성 가능)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귀중							



## 서식19 | 교육활동 침해 사안 형사고발 요청서 (피해교원 → 학교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 받은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교육감의 형사고발을 요청합니다.

구분	성명	연락처	주소
피해 교원			
침해자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생의 보호자			
사안의 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형사고발 요청이유			
첨부 서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자료 일체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제출.

(교권 업무 담당자는 형사고발 요청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자료 일체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

서식20 | 위촉장



# 위촉장

소속 :

성명 :

귀하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임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 서식21 | 위촉 동의 및 보안 유지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_\_\_\_\_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할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학교장 귀하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

## 서식22 | 재심 청구서 (학생(보호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서						접 수	번호	교원-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학생과의 관계]	
	(전·퇴학) 학생	성명		전소속		학교	학년	반
피청 구인	(전·퇴학) 조치 학교명	( ) 학교	소재지	( )시 ( )동	학교장			
	(전·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전·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청구 이유								
<p>「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재심청구인 : (            )인</p> <p><b>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하</b></p> <p>「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8항에 의거 조치 중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징계조정위원회에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p>								



서식23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 비용 부담 신청서  
(교원→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신청인	(성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현 소 속	_____교육지원청	생년월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_____학교	현 주 소	
	<input type="checkbox"/> 정규교원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 연락처	010 - -
	담임( 학년 반)/교과전담( 과목) 담당업무:	* E-mail	(자주 확인하는 메일)
교권 업무 담당자 성명		교권 업무 담당자 전화	010 - - 031 - -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일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일자 (20 . . .)		
침해자	<input type="checkbox"/> 학생(성명: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성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성명:    관계: )		
근무상황	<input type="checkbox"/> 근무 중 <input type="checkbox"/> 병가 중(기간 20 . . ~ 20 . . .) <input type="checkbox"/> 병가 예정(예상기간 20 . . ~ 20 . . .)		
신청 사유	* 교육활동 침해 내용과 신청 사유를 일시, 장소, 정황, 상대방, 침해 행위 등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사용 가능)		
첨부서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통지서([서식 16] 피해 교원용) 첨부 필수		









서식26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사안처리대장 ○○학년도

○○○학교

순	피해교원		침해자		내용	학교교권 보호 위원회 개최일	학생 조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결과 통보일	기타
	직급	성명	구분	성명						
					○ ○					
					○ ○					
					○ ○					

- ※ 구분 란에는 피해교원과의 관계 기재(예: 학생/학부모 등)
- ※ 내용 란에는 사안발생일, 장소를 포함하여 사건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 ※ 기타 란에는 재심 등 청구 여부 및 그 결과, 분쟁조정 성립 시 합의사항 등 기재

# 심리상담 협력기관 목록(51기관)



권역	지역	기관명	연락처	주소	
북부	고양 (1)	마인드스토리 심리 상담센터	031-974-3690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64 삼진빌딩 403호	
	구리 남양주(2)	한국교류분석센터	031-553-5213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 139번길 9-42 팔당비전힐	
		허그맘허그인 남양주 다산 심리상담센터	031-554-1023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17, 7층 16호(다산동, 안강E타워)	
	김포 (2)	김포아라 심리상담센터	031-8048-9998	김포시 김포한강1로 250 골든타임 8층 802호	
		허그맘허그인 김포심리상담센터	031-994-6255	김포시 김포대로 855 네오프라자메디칼센터 3층 301호	
	동두천양주 (1)	김지수 심리상담연구소	031-859-6818	동두천시 평화로 2716번길 23-1	
	의정부 (3)	심리치유센터 마음햇별	010-9952-1488	의정부시 회룡로 117번길 45, 은성빌딩 201호	
		마음자람 심리상담센터	031-843-2580	의정부시 평화로 미림프라자 305호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031-928-5846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파주 (1)	서우마음심리센터	031-942-238	파주시 동산3길 5, 3층	
포천, 연천, 가평	협력기관지정되지 않음(51개 기관 중 희망기관이용)				
남동	광주하남 (3)	한국진로상담연구원	031-796-0617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84 미사탑프라자 701호	
		마음푸름연구소	031-796-6195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46-14, 1층 105호	
		꿈세움심리상담센터	010-7682-0617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84 미사탑프라자 701호	
	성남 (4)	마음톡톡 상담센터	031-701-3498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89번길 25, 1층 좌측상가	
		소안심리상담센터	031-701-7776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5 kcc웰스타워 B동 1113호	
		이룸심리상담연구소	1666-9208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16, 젤존타워1차 902호	
		파이심리상담센터	031-703-0103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2 청흥빌딩 4층	
	안성	협력기관지정되지 않음(51개 기관 중 희망기관이용)			
	안양 과천 (3)	미소담심리상담센터	031-384-2336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1 금강벤처빌 405호	
		나나토리	070-7856-4452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 504호 (호계동 데시앙플렉스)	
평촌우리들 심리상담센터		031-388-1578	안양시 동안로120 올림픽스포츠허브 309-1호		
양평 (1)	HUG 마음상담심리센터	031-775-9876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34 명성빌딩 4층 2호		



권역	지역	기관명	연락처	주소
남동	여주 (1)	마인드편지심리상담센터	031-886-8711	여주시 세종로 254-8
	용인 (4)	만남과 자람상담센터	031-282-4540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3-2 제일프라자 304호
		다별심리상담교육연구소	010-5515-7018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37 쥬네브스타월드 B 144호
		한양아이소리 심리상담센터	031-898-1500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19로 데이파크 c동 302호
		우리들의 정서 상담센터	0507-1325-5193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9 태평양프라자 405호
	이천 (1)	관촬아심리상담센터	031-632-2837	이천시 이섭대천로 1321 K타운 2동 103호
	평택 (3)	로저스심리상담센터	031-655-7583	평택시 평택 5로 34번실 43-18 2층 202호
		다운심리상담연구소	031-663-3347	평택시 서정북로 81, 301호
		재활심리치료교육센터	031-610-4217	평택시 삼남로 283 한국복지대학교 미래관 105호
	남서	군포 의왕 (3)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031-450-5071
온새미로 심리상담연구소			070-8860-1929	군포시 신본로 343번길 7 창선빌딩 303호
아원심리상담연구소			031-423-9634	의왕시 내손동 갈미2로 12 202-2호(해피플러스투)
광명 (1)		여여심리상담연구소	02-2612-2799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 미성오피스텔2차 306호
부천 (3)		한국가족사랑연구원	032-721-8669	부천시 길주로 243 4층 402호(중동, 제일프라자)
		한울심리상담센터	032-226-4740	부천시 길주로 276 무광오피스 402호
		다음심리상담연구소	032-329-0012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90 메가플러스5층 503호
수원 (4)		우리동네심리발달 상담센터	031-205-5204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21 아셈프라자 406호
		마음풍경심리상담연구소	031-305-7415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대우월드마크 102동(오피스텔) 804호
		연세주니어상담센터	031-271-0050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0 정연메이저 빌딩2층 208호
		하이맘가족상담연구소	031-292-2152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21길 24-3, 201호
시흥 (3)		예그린심리상담센터	031-315-1002	시흥시 능곡동 762번지 송죽센터프라자 4층
		마음담은심리상담연구소	031-311-2112	시흥시 복지로 99번길 12번지 3층
		마음힐링심리상담센터	031-8042-3533	시흥시 수인로 3366 5층
안산 (3)		다리꿈발달상담교육센터	031-416-7179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51, 2층
		라파상담센터	031-501-1148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93, 3층
		경일심리상담연구소	031-439-0270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54 메이스타워 5층 506호
화성 오산 (4)		닥터오심리상담센터	031-374-8508	화성시 동탄역로 124 9층 901호(윤정프라자)
		희망아동가족상담센터	031-8050-8838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06 서건에듀프라자2동 7층
		한국심리상담센터	031-221-4234	화성시 병점1로 218 B동 505호(씨네샤르망)
	허그맘허그인 동탄심리상담센터	031-378-3866	화성시 동탄대로 537 라스플로레스 B동 412호	

# 심의 및 분쟁조정 절차 시나리오(예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시나리오(예시)

**개회선언**

- ※ 각 당사자를 분리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회의 자료 준비 및 위원 참석 확인
- (간사) 반갑습니다.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학교교권보호 업무담당자(간사)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학교 제○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인사말, 안건상정**

-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의거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000-00, A교사와 B학생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안내**

-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간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 (위원장) 간사께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 (간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과정은 녹음됩니다.
- (위원장) 주의사항 전달
  -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선도·조정조치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임을 밝힙니다.
  -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조사  
내용보고**

(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사건 조사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 ○일 장소에서 교육활동 침해(분쟁)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인 ○○○ 학생은 ○월 ○일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 당사자 사이 상반된 주장이 있는 경우  
 - A교사와 B학생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다툼 없는 사실은 ~이고, 당사자 사이 상반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교사 측 주장 및 관련 증거는 ~입니다.  
 · B학생 측 주장 및 관련 증거는 ~입니다.  
 ☞ 피해사진, 진단서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간사) 오늘 피해교원과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하였고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 조정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진행)**

**쟁점 사항  
확인,  
질의응답**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원치 않으므로 이번 위원회의 주요 쟁점 사안은 당사자의 상반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판단, 침해학생 및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내용 결정으로 요약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간사) A교사(또는 B학부모)는 오늘 출석하지 않아 서면 진술로 대체하였습니다. A교사(또는 B학부모)에게 사안의 요지 및 위원의 회의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고, A교사는 불출석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서면 진술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입장**

• **피해교원 입장**  
 (위원장) 먼저 피해교원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해당 교원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는 피해교원을 입장시킨다.)

**피해교원  
신원 확인**

(위원장)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피해교원) 저는 ○○○입니다.

**기피 확인**

(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 신청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 기피 신청 하지 않겠습니다.(또는 000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합니다. 기피 사유는 ~ 입니다.)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진술 시  
주의사항  
설명**

(위원장) 다음으로 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내용  
설명**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피해교원  
진술 및  
질의 응답**

**〈피해교원 진술 및 질의 응답〉**

(위원장) 선생님께서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 또는 필요한 발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침해 사실 확인(특히, ○○○학생과 보호자의 주장과 다른 경우 확인)
-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 확인
- 피해 교원의 임신, 장애 여부 확인
- 기타 선도·교육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확인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선생님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한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 교육활동 보호조치를 위한 바람과 요구 사항을 진술

**피해 교원  
퇴장**

• (위원장) 질의 답변 종료 확인 후 **피해 교원 퇴장**

※ 피해교원이 불참한 경우, 서면 등 대체하여 진술 가능. 허락되지 않은 참여자가 없도록 사전 확인 필요.

**관련 당사자  
입장**

**〈관련 당사자 입장〉**

(위원장) 다음은 관련 학생 및 보호자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관련 당사자(학생,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는 침해관련자를 입장시킨다.)

(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관련 당사자  
신원 확인**

(침해관련자) 저는 ○○○입니다.

**기피 확인**

(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 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 기피신청 하지 않겠습니다.(또는 000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합니다. 기피 사유는 ~ 입니다.)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진술 시  
주의사항  
설명**

(위원장) 다음으로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내용  
설명**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학생과 보호자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당사자  
진술 및 질의  
응답**

**〈관련당사자 진술 및 질의응답〉**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침해사실 확인(침해사실 인정여부, 피해교원의 주장과 다른 경우 상세 확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관계회복정도)
  - 추가적 판단요소(장애 여부)
  - 기타 선도·교육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해관련자) 마지막 진술

**관련 당사자  
퇴장**

- (위원장) 질의 답변 종료 확인 후 침해관련자 측 퇴장
  - ※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하여 참석 요구. 불참일 경우, 서면 등 대체하여 진술 가능. 허락되지 않은 참여자가 없도록 사전 확인 필요.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

(위원장) 지금까지 당사자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 여부인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 해당여부
-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인지 여부
- 3)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겠습니다.

※ 간사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자료 제공

위원님들께서는 간사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신 후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상호 의견 개진〉**

(위원장)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생각하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 해당 사안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동의로 「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침해행위자  
주 조치 심의**

**• 기본 판단**

(위원장) 본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판단 요소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는 침해 학생 조치기준 자료 제공

(위원장) 기본 판단요소 중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각성’ 정도에 대한 점수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성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점수 의결〉

(위원장) 침해행위 심각성은 ○점으로 의결되었습니다.(의사봉)

(위원장)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 진행

다음으로 ‘침해행위 지속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행위 고의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학생 반성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회복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심의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과반수 의결에 따라 심각성 ○점, 지속성 ○점, 고의성 ○점, 침해학생 반성 정도 ○점,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점, 총○○점입니다.

(위원장)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에 의하면 제○호 조치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판단

- (위원장) 다음은 기본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해 추가 판단 요소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먼저,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이 가능하며, 피해 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이 가능합니다. 위원께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 확인
  - \* 가중, 감경 사유가 있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침해학생에 대하여 장애가 확인되었는데 조치를 감경할지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감경, 가중 사유 검토 및 상호 의견 개진)
  - \* 가중 · 감경할지 여부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침해 학생 부가 조치 여부 심의

- (위원장) 다음으로 부가 조치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침해 학생 선도를 위해 1, 2, 4, 5호 조치에 부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가능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간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장)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조치를 하는 경우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시간과 보호자에 대한 참여 시간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및 보호자의 참여 시간은 몇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간 의견 개진 후)
- (위원장)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보호자의 참여 ○시간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결정된 경우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간을 결정하며, 학생의 보호자 참여 시간도 정함.

침해 학생 조치 최종 의결

〈교육활동 침해 조치 의결 및 종료〉

- (위원장)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 내용을 종합한 결과 심각성은 △점, 지속성은 △점, 고의성은 △점, 반성 정도 △점, 관계회복정도 △점이며, 합산 △점입니다. 교육부 고시상의 가중 · 감경 사유는 없으며, 또한 부가 조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호 ●●조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에 대해 제◇호0000 조치 및 특별교육 0시간, 보호자 참여 0시간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피해 교원 보호 조치 결정

• 조치 논의 및 결정

- (위원장)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논의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1) 피해교원(○○○)은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 상담과 특별휴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 (다른 위원 의견 개진 및 논의 후 찬반 의사 결정)

〈결 정〉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교원 ○○○에 대한 보호조치는 출석위원 ○명 중 ○명의 동의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권고합니다.

조치 내용(낭독): ○○○



**불복 절차  
안내 및 폐회**

(위원장)

- 침해학생 및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불복절차 안내
-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 등 안내

1) 보호조치 비용 부담 원칙

–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부담 원칙.

2) 구상권 행사

– 관할청이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우선 부담 후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이것으로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시나리오(예시)

#### 개회선언

\* 각 당사자를 분리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회의 자료 준비 및 위원 참석 확인  
 (간사) 반갑습니다.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학교교권보호업무담당자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학교 제○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인사말, 안건상정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제19조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 관련 분쟁 사안을 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의거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000-00, A교사와 B학부모가 관련된 사안입니다.

#### 제척, 기피, 회피 안내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간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조정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조사 보고

(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간사) 교육활동 침해(분쟁 조정)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 ○일 장소에서 교육활동 침해(분쟁)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인 학부모님은 ○월 ○일 의견진술을 하였습니다. 양당사자 모두 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 상반된 주장이 있는 경우  
 - A교사와 B학부모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다툼 없는 사실은 ~이고, 당사자 사이 상반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교사 측 주장 및 관련 증거는 ~입니다.  
 · B학부모 측 주장 및 관련 증거는 ~입니다.  
 ☞ 피해사진, 진단서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 절차 개시

(위원장)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p><b>당사자 입장 및 신원확인</b></p>	<p>(위원장) 간사께서는 피해 교원과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는 피해교원과 학부모를 입장시킨다.)</p> <p>(위원장) 한 분씩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및 상대방 신원 확인)</p>
<p><b>기피 확인</b></p>	<p>(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p>
<p><b>조정 절차 설명</b></p>	<p><b>[분쟁조정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b></p> <p>(위원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는 잘못에 대해 판단을 내리거나 처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쟁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과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나누고 피해와 영향을 확인한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사안으로 서로 간에 생긴 어려움과 피해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솔직히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모두의 피해를 바로잡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대화에 적극 참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과 약속에 따라 대화하며 진행자의 진행에 잘 따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행 규칙에 따라서 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p> <p><b>[주의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대방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자신의 발언 시간을 기다려 이야기한다.</li> <li>2. 상대를 비난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을 삼가고 조정자의 진행과 통제에 따라 참여한다.</li> <li>3.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li> <li>4.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li> </ol>
<p><b>당사자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b></p>	<p><b>[당사자 의견 청취]</b></p> <p>당사자 :</p> <p><b>[질의응답]</b></p> <p>조정위원 :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안에 대한 조정 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할 내용이 있으신가요?</p>
<p><b>조정절차 마무리</b></p>	<p><b>[조정 성립시 분쟁조정합의서(서식7) 작성]</b></p> <p><b>[조정불성립된 경우 심의절차로 진행]</b></p> <p><b>[심의이후 절차 안내]</b></p> <p>조정위원 1) 양당사자 모두 재조정 원하는 경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정 결과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p> <p>2) 피해교원이 재심을 원하는 경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행정심판 절차 안내</p>
	<p><b>[폐회]</b></p>



### A. 분쟁조정 성립

**조정 합의안 제시**

(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한발씩 양해가 필요합니다. 상호 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선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000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 이의가 없으신가요?

**조정합의안에 대한 당사자 의견 제시**

(피해교원, 학부모 동의)

**조정 합의서 작성 및 서명 날인**

(위원장) 이로써 당사자 사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 조정 합의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 하겠습니까. 작성된 합의서는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분쟁 조정 합의서 작성 및 서명날인)

**종료**

양 당사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 분쟁조정 불성립

**조정 합의안 제시**

(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한발씩 양해가 필요합니다. 상호 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선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000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 이의가 없으신가요?

**당사자 의견 확인**

(피해교원, 학부모 부동의)

**조정불성립 선언**

(위원장) 당사자 간의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성립 이후 절차 진행에 대한 당사자 의사 확인**

(위원장) 이 사안에 대하여 추후 어떻게 진행하길 원하시나요?  
양 당사자 모두 여전히 분쟁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의 재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고, 분쟁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절차로 진행합니다.

**심의절차 진행**

(위원장) 당사자들에게 분쟁의 재조정 의사가 없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진술한 당사자의 의견 및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여부 및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추가진술**

양당사자는 이미 진술한 내용 외에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습니까?

(피해교원, 학부모 추가진술 진행 또는 추가진술 없음)

**심의 의결 및 사안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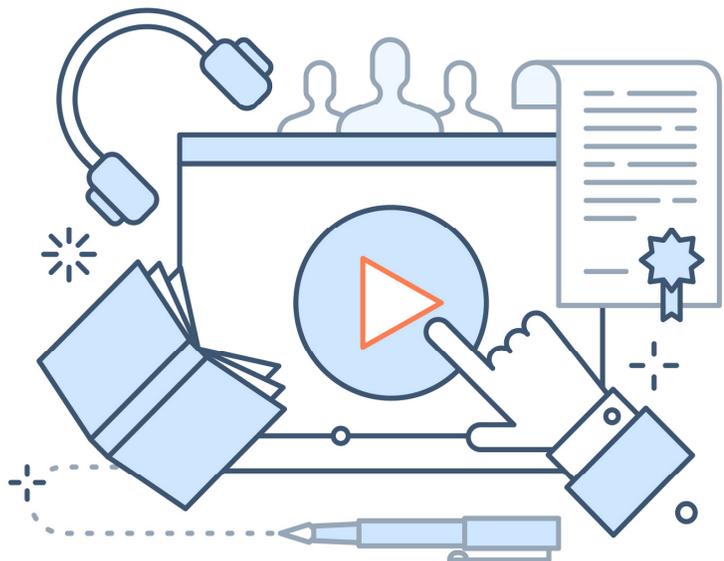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등 구체적 심의, 의결 진행  
[심의 절차 시나리오] 참고



참고1 | 위원회 비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근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심의 사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교 규칙 위반 행위
학생 조치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피해 교원 보호 조치	가능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불가능
유의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조치는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학교 규칙 위반행위로 조치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이유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할 수 없음.)





## 참고2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준수 확인 체크리스트



분 류	구 분	세부사항
구 성	위 원	<input type="checkbox"/> 교원위원 1/2 초과 금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위원장 포함 5인~10인으로 구성
출 석 통 지	출석통지서	<input type="checkbox"/> 사안의 요지 설명 여부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통지)
		<input type="checkbox"/>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목적(분쟁 조정인지, 심의인지) 안내
	서면진술서	<input type="checkbox"/> 서면진술서 송부 여부
		<input type="checkbox"/> 서면진술서 회신 기간(3~5일 정도) 보장 여부
심 의	정족수	<input type="checkbox"/> 재적 위원 2/3이상 출석 여부
		<input type="checkbox"/> 개의정족수에 기피 결정된 위원 포함하여 카운트
	제척·기피·회피	<input type="checkbox"/> 당사자에 대한 기피 신청 의사 확인
		<input type="checkbox"/> 기피 사유 심의 및 기피여부 결정 <input type="checkbox"/> 기피결정된 위원을 심의 및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
조치의 적정성	개별 판단요소	<input type="checkbox"/> 각 판단 요소별 합의 점수 도출 (평균점수 아님)
	전학 및 퇴학 조치의 제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동일학생에 대한 최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인지 여부(전퇴학불가)
		<input type="checkbox"/> 동일학생에 대한 최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인 경우 폭행, 상해, 성폭력 범죄 유형인지 여부(전퇴학 가능)
		<input type="checkbox"/> 동일학생에 대한 최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아닌 경우 그 이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바 있는지 여부 (종전 조치가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아닌 경우 전퇴학 불가)
		<input type="checkbox"/> 종전 조치의 적법성 여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input type="checkbox"/> 시간으로 특정하여 조치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독으로 조치 시 근거조항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input type="checkbox"/> (전학조치시)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근거 조항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input type="checkbox"/> 1, 2, 4, 5호 조치에 부가하는 경우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3항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참여 시간 별도로 정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참여 조항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 명시		
출석정지 조치	<input type="checkbox"/> 일수로 특정	
조치 양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사안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닌지 여부	
결과 통지	조치 결과 기재	<input type="checkbox"/> 조치 내용 및 법률 근거 적시
		<input type="checkbox"/>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의 구체적인 기재
	조치원인 기재	<input type="checkbox"/> 조치원인과 무관한 내용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input type="checkbox"/> 전체적인 사실 기재 없이 유형만 나열하지 않도록 유의 <input type="checkbox"/> 침해자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행위자와 행위를 특정



참고3 | 과태료 부과 절차

- 조치시일 및 이수 기간
  -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후 7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서면 통보
  -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 날 특별교육 미참여 보호자 명단을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
  -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1개월 이내에 참여할 것과 미참여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



▶ **침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심리치료)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경기도교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교원지위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심리치료)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심리치료)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
  - 경기도교육감은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함
- 보호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
    -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의무는 유지됨



## 참고4 | 과태료 부과 안내(예시)



※ 본 예시안을 참고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시 함께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

#### 1.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의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 「교원지위법」)」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내려진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

#### 2.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그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동참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3. 과태료 부과 기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300

2022. 00. 00

0 0 0 0 학 교 장



## 참고5 | 원격 수업 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안내

**1. 원격 수업 중 교육활동 보호 강화**

원격수업 중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전파성이 높고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므로 특히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원격수업 중인 교원의 영상 등을 촬영, 녹음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2. 원격 수업중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강화****가. 원격수업 시 학생이 지켜야 할 사항 안내**

- 원격 수업 링크(URL), 비밀번호 정보 지키기
- 선생님의 수업 영상과 자료는 학습용으로만 사용하기
-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 사진, 영상 촬영하지 않기
- 수업과 관련 없는 자료, 상처주는 글 게시하지 않기
- 원격 수업 중 부당한 요구나 간섭 자제하기

**나. 원격수업 시 교육활동 보호 자료 활용**

- [수업전40초] 동영상
- 가정통신문 (예시) 활용
- \* 경기도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more.goe.go.kr/eapc/index.do>) 자료실 탑재

**3. 원격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한 경우****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 원격 수업 내용 등에 대하여 단독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비하하는 행위
- 출석확인, 댓글달기 과정에서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

[성적 언동, 성폭력범죄]

- 원격 수업 중 마이크를 켜고 교원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 원격 수업 중인 교사의 얼굴을 촬영, 캡처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 경우

[촬영물등배포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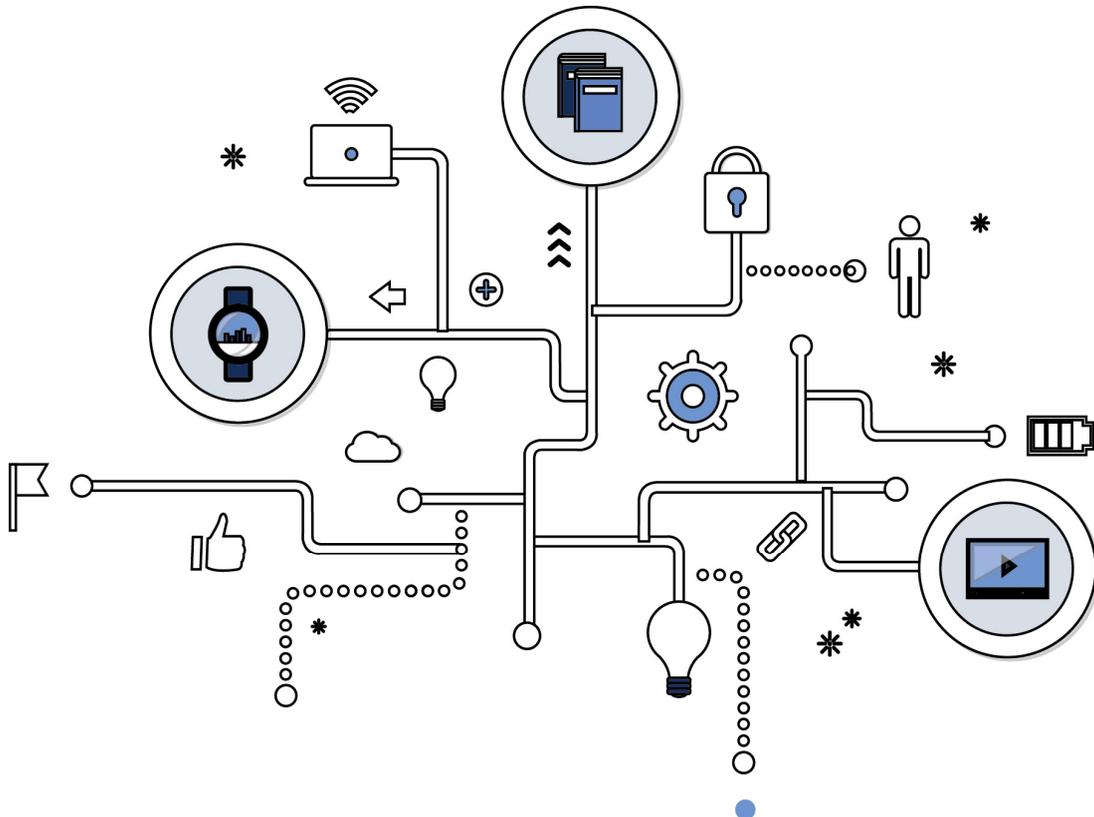
- 원격수업 중인 교원의 얼굴, 음성등을 촬영, 녹음하여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 등

**나. 원격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 대응**

- 댓글 캡처 등 입증 자료 확보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이행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예시) .....	95
2.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	98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	101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11
5.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119
6.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19
7.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	120
8.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123





## 부록1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예시)



## ○○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해당 안전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전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및 자격상실)**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또는 퇴학(자퇴 포함)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당사자 출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한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분쟁조정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분쟁조정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 거부·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11조(분쟁조정 성립 및 결과 처리)** 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분쟁조정이 성립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당사자의 의견
3. 조정의 결과

③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4조(회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 . ○. ○.부터 시행한다.



## 부록2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단, 외부위원은 관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 등)** ① 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피해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사안의 「교원지위법」 제16조 제1항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
- ② 교권보호 담당부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분쟁조정 신청)**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및 관련 학생이나 그 보호자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조정신청서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학교의 장은 조정신청서를 포함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서류 일체를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 종료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 개시)**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되,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가 주소불명, 인적사항 제공거부,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소속 기관장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쟁조정을 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쟁조정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2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된다.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간사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7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6. 1.부터 시행한다.





## 부록3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2호, 2021. 3. 2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교원소청) 044-203-6940

교육부(교육협력과-보수·수당) 044-203-6461

교육부(교원정책과-교육활동 보호) 044-203-6943

교육부(교육협력과-교원단체) 044-203-6495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삭제 <2019. 4.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4(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 3. 23.〉

⑥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중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3. 23.>]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약)** ①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약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교섭·협약 사항)**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 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약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 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특별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4. 16.>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② 관할청은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



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4. 16.>]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2. 3.]

[제19조에서 이동 <2019. 4. 16.>]

**제21조(벌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중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3. 23.>]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1조에서 이동 <2021. 3. 23.>]

부칙<제17952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한다.





## 부록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교육부(교육협력과) 044-203-6461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87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제2조(교원 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9. 10. 15.〉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 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9. 10. 15.〉 [본조신설 2013. 2. 5.]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중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20. 6. 9.>]

**제2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장관

나.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법」 제15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관할청은 「법」 제1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2조의3에서 이동 <2020. 6. 9.>]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2. 5., 2019. 10.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 10. 15.>

**제6조의2 삭제** <2019. 10. 15.>

**제6조의3 삭제** <2019. 10. 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 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관할청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제9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5.]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 8. 2.]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 ·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교육감은 「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11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법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 교원의 성별 현황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해당 안전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전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4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해촉)**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15.]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31.>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
2.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3.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고발
4. 「법」 제15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5.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6.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참여 조치
7.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본조신설 2019. 10. 15.]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0. 15.]

부칙 <제30756호, 2020. 6. 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5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0. 1.] [교육부고시 제2021-26호, 2021. 10. 1.,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lt;제2021-26호, 2021. 10. 1.&gt;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6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031-249-02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2.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고발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
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단장은 교권보호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상담받고자 할 때는 교권보호담당부서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하여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 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요청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비밀누설 금지)** 법률지원단 업무 수행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담요청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lt;제856호, 2019.12.31&gt;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7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경기도교육청 고시 2019-46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 부담하는 보호조치 비용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피해교원”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활동 보호조치비용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 등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치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교권보호 담당 장학관, 장학사 2명, 전문상담사, 변호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속 담당부서 장학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 부담의 제한 여부 및 범위
2. 제7조에 따른 구상권 청구 소의 제기 여부
3. 제8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예외 사안 여부
4. 기타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 이외의 간사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보호조치 비용부담의 신청 및 지급)** ① 「법」 제1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보호조치 비용부담을 신청하려는 피해교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은 경기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조치 비용부담의 제한)** ① 피해교원이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거나 보호조치 비용 청구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은 중복청구 또는 부당 청구된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피해교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구상권 행사의 통지 등)** ① 영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구상금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은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1회 이상 납부를 촉구할 수 있다.

**제7조(소의 제기)** 교육감은 보호자 등이 임의로 구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상금의 액수, 보호자등의 변제자력, 소제기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구상권 행사의 예외)** 영 제2조의3 제2항 제2호의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교육감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보호자 등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8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8.] [경기도조례 제6729호, 2020. 10. 8. 제정]

경기도교육청(교원역량개발과), 031-249-02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이 예우 받고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3.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⑤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밀을 유지하여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 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한다.

1.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구축
2. 민원 및 상담 전용별도 공간 마련

**제8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 및 컨설팅
2.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3.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한 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④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 관련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 등을 둔다.

⑤ 그 밖에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행정업무의 경감)**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반영)** ①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6729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 만든 사람들

**자문** 고효순(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과장)  
최병진(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장학관)

**집필** 이미연(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변호사)

**검토** 김선희(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장학사)  
김금란(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장학사)  
서미향(신백중학교 교장)  
류선실(판교중학교 교감)  
안혜정(서천중학교 교사)  
김종훈(남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박개원(당동중학교 교사)  
이종현(청명중학교 교사)  
김인경(서해중학교 교사)

배부일 2022. 2. 25.

※ 본 자료집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2022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